

의안번호	2126685
의 퇴 인	장혜영 의원
회 답 일	2024.1.26.
추 계 번호	23A4650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, 사무처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9.3억원(연평균 9.9억원) 이상으로 추계

- 전부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안 제16조·제17조·제25조·제38조(전문위원회 등 설치)	366	374	382	390	398	1,911	382
안 제18조(사무처 설치)	578	591	603	616	629	3,018	604
합계 ¹⁾	944	965	985	1,006	1,027	4,929	986

주: 추계가 가능한 일부 조사항에 대한 결과값임

주 1) 반올림으로 인해 단수 차이가 존재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	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·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2명 이내의 공무원 2. 공공기관 운영개선과 지배구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3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총연합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사람	의무규정
2	안 제15조 (운영위원회의 회의)	운영위원회 회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3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	의무규정
3	안 제16조 (전문위원회)	운영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17조 (소위원회)	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	재량규정
5	안 제17조 (사무처)	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,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.	의무규정
6	안 제25조 (공공기관 노정위원회)	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,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노정위원회를 둔다. - 노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.	의무규정
		- 노정위원회에는 노정교섭 사항의 협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한 조사기구를 둘 수 있다.	재량규정
7	안 제38조 (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의 인사검증)	운영위원회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 장의 인사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검증소위원회를 둔다 - 인사검증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- 인사검증 절차, 인사검증소위원회 구성·운영, 의견 청취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8	안 제39조 (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)	기타공공기관은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-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	×	- 현행 ‘공공기관운영위원회’ 운영예산(’23년 274백만원)으로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2	안 제15조 (운영위원회의 회의)		
3	안 제16조 (전문위원회)	○	- 유사사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처 운영경비 등을 준용하여 추계
4	안 제17조 (소위원회)		
5	안 제18조 (사무처)		
6	안 제25조 (공공기관 노정위원회)		
7	안 제38조 (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의 인사검증)		
8	안 제39조 (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)	×	-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, 이미 대부분의 기타공공기관이 비상임이사를 임원으로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* 2023년 3분기 기준, 기타공공기관은 총 272개이며 212개 기관이 비상임이사를 임명(최근 5년간 비상임이사가 0인 기타공공기관은 60개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·회의 개최(안 제9조 및 제15조)는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하고,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채용(안 제39조) 또한 이미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추계하지 않음

□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, 사무처를 두고 공공기관 노정위원회, 인사검증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국 기관운영비 및 전문위원회 관련 비용에 준하여 발생할 것으로 가정

-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며, 위원회 내에 특정 사항별 전문위원회를 두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국¹⁾을 두고 있음
 -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관련 예산(안): 6.7억원
 -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관련 예산(안): 4.6억원

[표 1]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사업현황(2024년 예산안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전문위원회 관련			사무국 기관운영		
위원회 기본경비 (비총액) ¹⁾	위원회 전산경비 ²⁾	합계	위원회 기본경비 (총액) ³⁾	위원회 전문성강화 ⁴⁾	합계
263	199	662	86	576	462

주 1)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비(182백만원), 여비(50백만원), 자산취득비(22백만원), 업무추진비(10백만원)
 2)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위한 연구용역비(183백만원) 및 기관운영경비(그 외 16백만원)
 3) 사무국 직무수행경비(34백만원), 공무원근로자 인건비(33백만원), 특근매식비 등(12백만원)
 4) 사무국 연구위원 상용임금(132백만원), 일반수용비(94백만원), 일반연구비(266백만원) 등
 자료: 고용노동부, 202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유사 사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최근 5년간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(2023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[표 2] 비용추계 기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(국회예산정책처 전망)

(단위: %)

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2.4	2.2	2.2	2.1	2.1	2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(2023.10.)

- 1) 「최저임금법」 제19조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.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.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, 제15조,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를 “전문위원회”로 본다.
- 제20조(사무국)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·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 ③ 연구위원의 자격·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개정안 부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심사 및 시행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위원회 설치

-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, 공공기관 노정위원회, 인사검증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인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비의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(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)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평균 3.6억원 수준으로 조사됨
 -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분과위원회: 생계비전문위원회, 임금수준전문위원회, 운영위원회, 연구위원회(총 4개)
 -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개최 실적('22년 7월~'23년 6월): 본회의 9회, 분과회의 9회

[표 3]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비 추이: 2020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비	325	307	430	268	462	358

주: 2020~2023년은 집행액, 2024년은 예산액 기준임

자료: 고용노동부, '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(7018-263, 비총액)' 및 '최저임금위원회 전산경비(7018-265, 비총액)' 항목의 최근 5년 예·결산 내역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)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운영비 평균 3.6억원([표 3])이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(2023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 [표 4]와 같이 추계

[표 4]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전문위원회 등 설치 (안 제16조·제17조·제25조· 제38조)	366	374	382	390	398	1,911	38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무처 설치

□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무처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인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운영비의 평균 수준이 추계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- (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)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평균 5.7억원 수준으로 조사됨
 - 2023년 기준,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총 11인으로 구성(사무국장 1인 포함 공무원 8인, 그 외 연구위원 2인과 및 공무원 비서 1인)

[표 5]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추이: 2020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운영비	699	646	646	176	662	566

주: 2020~2023년은 집행액, 2024년은 예산액 기준임

자료: 고용노동부, '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(7018-221, 총액)' 및 '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장화(3036-301)' 항목의 최근 5년 예·결산 내역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무처)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평균 5.7억원([표 5])이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(2023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 [표 6]과 같이 추계

[표 6]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무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사무처 설치(안 제18조)	578	591	603	616	629	3,018	60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, 사무처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49.3억원(연평균 9.9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전부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전문위원회 등 설치 (안 제16조·제17조·제25조)	366	374	382	390	398	1,911	382
사무처 설치(안 제18조)	578	591	603	616	629	3,018	604
추가재정소요	944	965	985	1,006	1,027	4,929	986

주: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는 단수 차이가 존재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립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nabo.go.kr